

	보도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6.9(화) 14:00부터 보도 가능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, 금융감독원 IT·금융정보보호단, 감독총괄국		
책임자	[금융위원회] 김동환 과장	담당자	[금융위원회] 윤덕기 사무관(2156-9491) 김경수 사무관(2156-9493) 서병윤 사무관(2156-9494)
	[금융감독원] 김유미 선임국장 최성일 국장		[금융감독원] 조성인 팀장(3145-7415) 이진석 부국장·팀장(3145-8001)
배포일	2015.6.9(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6매

제 목 : “정보처리 위탁도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변경” “국내·외 위탁은 자유롭게,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는 보호”

- 「정보처리 위탁규정」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[’15.6.10~6.30 (20일간)] -

- 정보처리 위탁과 관련, 사후규제로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부담 대폭 완화
 - 전산설비 위탁승인 폐지, “정보처리 위탁 금감원 보고”로 일원화
 - “사후보고”가 원칙, “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” 처리위탁만 사전보고
 - 국외위탁시 위탁대상 제한(본점.지점.계열사) 폐지 및 재위탁 허용
 - 일률적 표준계약서 사용의무 폐지

※ 미국·EU 등의 경우 사전통지 또는 사후보고 절차를 거쳐 정보처리 위탁을 자유롭게 허용하며 재위탁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탁자 제한없음

[별 첨] 정보처리 위탁 관련 주요 해외사례

- 암호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원칙은 유지하되,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
 -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원칙*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
 - * 암호화 등 관계법령(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보호법 등)의 의무사항 준수
 - 위탁계약에 문제가 있을시 금감원의 보완요구, 변경권고 등 조치 가능
 - * 위탁계약에 검사·감독 수용의무, 피해구제 절차 등을 명시

1. 추진 배경

- 국내·외 금융회사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

※ [참 고] 국내.외 정보처리 위탁 현황

- ① (해외)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전세계 고객정보를 본사 전산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으며, 많은 해외 금융회사들이 IT 전문회사의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정보처리를 위탁
- ② (국내) 중소형 은행, 증권사 등이 외부 전문회사(인터넷데이터센터(IDC), 코스콤 등)에 정보처리를 위탁하여 관리

- 우리나라는 '13.6월 관련 규정(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)을 제정하여 정보처리의 외부위탁을 허용하였으나, 일부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
- 이에 금융위원회는 총 5회에 걸친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분기별 간담회 및 현장점검반 운영시 제시된 의견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

2. 주요 내용

< 기본 방향 >

- ◇ 금융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기존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
- 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 부담 대폭 완화
- ② 정보처리 위탁시 개인정보 암호화 등 정보보호 관련법상 의무는 확고히 유지

가. 규제 체계 일원화 : 전산설비·정보처리 → 정보처리

㉠ “ (A회사 담당자) 정보처리는 전산설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, 이를 구분해서 보고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? 현 규정대로라면 전산서버 이전시 금융위 승인을 받고 다시 정보처리 위탁계약을 맺을 때 금감원 보고를 해야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.”

□ 현 규정은 정보처리 위탁은 금감원 보고, 전산설비 위탁은 금융위 승인대상으로 하여, 규제체계가 복잡하고 중복규제의 여지 존재

⇒ 정보처리 도구에 불과한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규율대상을 “정보처리 위탁”으로, 규율체계도 “금감원 보고”로 일원화



나. 정보처리 보고 : 사전 보고 → 사후 보고 원칙으로 변경

㉠ “ (B회사 담당자) 현 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거래정보가 아닌 저희 회사 내부 인사관리를 위한 임직원 정보조차 미국 본사로 보내기 전 금감원에 사전보고를 해야 해서 너무 번거롭고 행정적인 부담도 큼니다.”

□ 현재는 정보의 성격 및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보* 처리를 사전보고 대상으로 규정하여 업계는 과도한 행정부담 호소

*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외에 내부업무(인사, 예산 등) 정보, 법인고객 금융거래 정보 등도 포함

○ 이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· 신용정보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*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

* ① 개인정보보호법 : 개인정보만을 규율 대상으로 함(단, 고유식별정보 보호 강화)

② 신용정보법 : 개인신용정보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·활용에 대한 동의 등 규정

③ 정보통신망법 : 개인정보의 보호를 별도의 장으로 두어 보호절차·기준 규정

- ⇒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시 금감원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규정하되,
- 보다 엄격한 점검이 필요한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감원에 사전보고토록 함

다. 위탁시 수탁회사 제한 철폐 및 재위탁 허용

㉮ “ (C회사 담당자) 정보처리는 전문 IT업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수탁 회사를 본점, 지점, 계열사로만 한정하는 현행 규정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.”

- 현재는 정보처리 국외위탁 수탁자를 본점·지점·계열사로 제한하고,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(금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)
 - 이는 제3자에 대한 정보처리 위탁을 폭넓게 허용하는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한 규제이며, 특히 재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 재수탁업체의 적격기준*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
 - * 전문성, 기술력, 보안성 등을 심의하여 전문 IT 서비스 업체에 대한 재위탁 허용
 - 아울러, 외국계 금융회사는 현재도 해외의 본점·지점·계열사 위탁 후 재위탁을 통해 해외 IT전문회사에 정보처리 위탁이 가능한데 비해,
 - 해외지점이 없는 국내 금융회사는 해외 IT전문회사에 정보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, 해외지점 위탁 후 재위탁이 불가능하므로 역차별을 받을 소지가 있음

⇒ 정보처리 국외위탁 시 기존의 수탁자 제한 조항(본점·지점·계열사)을 삭제하여 IT전문 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 허용

- 재위탁 시에도 위탁과 동일한 허용기준을 적용하되, 재수탁업체의 준수사항* 및 책임관계(연대책임)를 명확화

* 특정정보보호, 금감원 보고, 감독 및 검사 의무 준수 등

라. 일률적 표준계약서의 사용의무 철폐

㉠ “ (D회사 담당자) 문서·시설·인원 등에 대한 주기적 보안점검 및 임직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 실시 등 사적 계약의 영역까지 세세하게 규정한 표준 계약서 때문에 저희와의 위·수탁계약을 망설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.”

□ 현재는 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금융당국이 제시한 **표준계약서**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**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저해**한다는 지적

⇒ 금융회사별 또는 업권별 위·수탁의 **특수성을 반영**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**기본사항***만을 규정

* 감독당국의 감독·검사 수용의무,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·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 등

◇ [참 고] 제도변경에 따른 안전장치

①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원칙*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

* 암호화, 관계법령(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보호법 등) 준수, 위탁계약에 피해구제 절차 등을 명시

②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 관련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감원의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, 변경권고 등의 조치 가능

3. 향후 계획

□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(6.10~6.30) 이후 제5차 금융개혁회의(6.18) 보고와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

4. 기대 효과

-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통한 비용절감과 핵심업무 집중에 따른 업무효율성 증가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
- 정보처리 외부위탁 절차 간소화에 따라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시에도 정보처리의 외부위탁을 통해 전산설비 구축 관련 초기 비용부담 완화 가능
-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규제체계 합리화·금융제도 선진화로 국내·외국계 금융회사의 과도한 업무상 애로를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

[별 첨] 정보처리 위탁 관련 주요 해외사례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